즉시접수	당일접수	기 나이야기 대한법률구조공단
		oc.or.kr
제출자		www.klc
총	건	an ornalism of MERGONIA con

지상권변경등기신청

						시상전	! 번	경궁	/ 1	7.43			
)	ì.		년	월	일	- = 1 1 -	41	등기	기관	확인	·	각종	통지
접	수	제			호	처리 의 역	인						
						<u>]:</u>	부동	산의	표스]			
	등기	원인과	- ユ ⁽	 연월	[일	년		월	일				
	등	기 의	목	 적		지상권병	きる						
	변	경 할	사	 항									
구분	1_	성 (상호	명 <u>C</u> 명칭			주민등 (등기용등				주	소	(소 재	지)
등 기 의 무 자													
등기권리													

자



바	록	면	허	세	Ę	<u>1</u> .						-10 mww.klac
지	방	교	육	세		<u>1</u> 1						원
세	액		합	계		1						원
					=	<u>1</u> 1						원
등	기 신	청	수 수	료	납투	브번호	:					
					일굍	날납부	· :		건			원
				팅	기의	무자:	의 등	기필	정보			
Ĵ	부동산고	1유번	<u></u> 호									
	성명(명칭)			일련	변번호	-			비밀번호	
					첨	부	<u></u>	서	면			
・ 변	경계약시	1				통	• 위 '	임장				
• 등	록면허셔	11영수	<u> </u>	서		통	(7)	타〉				
• 등	기신청건	수호	로 영수	필확인	l서	통						
• 등	기필증					통						
• 인김	}증명서\	구 본	-인서명시	}실확 [©]	인서 !	또는						
전지	\본인서 [*]	명확역	인서 발	급증		통						
					١	년	윝]	일			
	Ç	귀 신	청인						(<u>)</u>	(전화 : (전화 :)
(또는)위 대리인									(2	전화:)
			지방	법원					귀층	<u> </u>	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지상권변경등기신청

	,	년	월 일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수	제	호	처리인		

① 부동산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m²

이 상

2	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 년 4 월 3 일 변경계약
3	등 기 의 목 적	지상권변경
4	변 경 할 사 항	2017년 3월 3일 접수 제1001호로 경료한 지상권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 "2017년 3월 3일부터 10년"을, "2017년 3 월 3일부터 15년"으로 변경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 주 소 (소 재 지)
⑤ 등 기 의 무 자	이 대 백	700101-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(서초동)
⑥ 등 기 권 리 자	김 갑 동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801231-1234567 10, 가동 101호(서초동, 샛별아피 트)



삭1행

⑦ 등 록 면 허 세		급	6,000원 🧸 🧥 🔭			
⑦ 지 방 교 육 세		금	1,200원			
⑧ 세 액 합 계		금	7,200원			
		금	3,000원			
⑨ 등기신청수수료		납부번호 : 12-12-12345678-0				
		일괄납부 : 건	원			
(10 등	-기의무자의 등기필정	보			
부동산고유번호		1102-2006-002095				
성명(명칭)		일런번호	비밀번호			
이대백		A77C-LO71-35J5	40-4636			
	11)	첨 부 서	면			
• 변경계약서		1 통 · 인감증명서	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			
•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	서	1통 전자본인서	명확인서 발급증 1통			

삭1행

등기필증

2017년 4월 3일

통 〈기 타〉
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**1**통 · 위임장

① 위 신청인 **이 대 백** ① (전화: **010-1234-5678**)

김 갑 동 ① (전화: 010-5678-1234)

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)

서울중앙 지방법원 등기국 귀중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rww.klac.or.krif for

등기신청안내서 - 지상권변경등기신청

■ 지상권변경등기란

지상권의 내용인 지료, 존속기간, 목적 등을 계약에 의하여 변경한 경우에 하는 등기입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
지상권변경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항극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륵 사용하고, 벽지륵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격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합니다. 토지(임야)의 표시방법은 토지의 소재,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합니다.

② 둥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"변경계약"으로, 연월일은 변경계약성립연월일을 기재합니다.

③ 둥기의 목적란

"지상권변경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변경할 사항란

변경등기를 할 지상권의 접수연월일, 접수번호를 기재하고, 변경할 사항을 특정하여



야 합니다.

예) 2010년 5월 1일 접수 제5000호로 경료한 지상권 등기사항 중 존속기간 "2010년 5월 5일부터 10년"을, "2010년 5월 5일부터 15년"으로 변경

⑤ 등기의무자란

등기의무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합니다.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⑥ 둥기권리자란

등기권리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⑦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

⑧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⑨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 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 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 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⑩ 둥기의무자의 둥기필정보란

- ②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 티커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 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 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©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가 없습니다.

(소) 대한법률구조공E

①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② 신청인등란

- ⑦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,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대표자의 인감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서명(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제출할 경우에도 서명)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지상권변경계약서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③ 등기필증

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소유권 취득 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,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지상권설정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. 단,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< 시·구·군청 >

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②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

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하거나,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『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く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, 지상권변경계약서, 등기필증 등 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